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근거 마련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0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12. 31.

다. 회 부 일: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 47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7조의9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7조의9(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u>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u>

현행	개정안
	2. <u>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u> 3. <u>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u> 4. <u>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u> 5. <u>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u> 6. <u>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u> 7. <u>그 밖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다. 검토사항

현행법 제47조의7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법 제47조의8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창업 지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역관광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광 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2)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은 현행법 제47조의8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개념³⁾과 사업 내용이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스마트관광사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5년 (A)	'26년 (B)	증감 (B-A)
○ 민관 협업 한국관광 데이터 구축	9,725	17,865	8,140
○ AI 기반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	3,000	3,000
○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	5,125	6,060	935
○ 관광데이터 전주기 강화 및 관리 기술개발	-	1,875	1,875
○ AI 에이전트 기반 관광서비스 기술개발	-	1,875	1,875
○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특화프로그램	-	3,000	3,000
○ 관광플러스테크	1,650	1,650	-
계	29,201	35,325	6,12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77

3) ICT, AI,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하여 관광산업 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